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946
----------	------

2025년 9월 1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8월 11일, 김경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: 2025년 8월 14일
- 다. 상정일자: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9월 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김경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- 2022년 동 조례 상위 법령인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‘시·도 환경교육계획 수립’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었고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었음.
 - 이에 이에 2023년 서울특별시에서도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5년마다 ‘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’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 - 현재 시행 중인 ‘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’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‘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’ 및 ‘이행평가 결과의 환류’를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(안 제4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

-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은 상위법인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⁾」과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·시행되고 있으며, 주요 내용에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,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,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, 자료의 개발 및 보급, 민간 활동의 활성화, 이행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제2항은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‘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’과 ‘이행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’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견 없으며, 이를 통해 환경교육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1) 제6조(시·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
7.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
8.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
9.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10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</u></p> <p>7. <u>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</u></p> <p>8. <u>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</u></p> <p>7. <u>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</u></p> <p>8. <u>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<u>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</u></p> <p>10. <u>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